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570

Ⅰ. 제안경위

○ 본 조례개정안은 향후 병원이전 계획을 고려하여 병원명칭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4. 9. 23.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2004. 9. 30. 회부됨

Ⅱ.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병원명칭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등 다른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병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강남병원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남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울시의 일부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겠음

○ 다만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이 매우 일반화된 명칭이라는 점에서 이미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민간병원 중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데, 변경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Ⅳ. 참고사항

○ 예산조치, 신・구 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참조